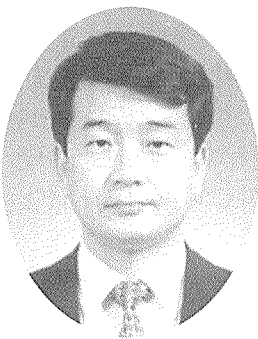


OECD 가입에 따른 국내 석유산업 대응방안



배 위 섭

〈통상산업부 자원정책과 사무관〉

1. 머리말

우리 나라는 지난 95년 3월 29일 OECD측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이어 진행된 11개 위원회의 가입심사를 거쳐 96년 10월 11일 OECD 이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가입을 초청받았다. 무역규모와 경제력에서 세계 10위권에 도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OECD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력과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 수행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나라가 적극적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선진국의 대열에 다가갔다는 측면에서 OECD 가입의 의의를 생각할 수 있고, 선진국들도 우리 나라의 가입을 환영하고 있다. OECD 가입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경제의 효율성 증대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여건의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이룰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력 이외에 민주주의와 인권 등 정치적 성숙도도 가입 심사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는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얻게 되는 실익도 많지만, OECD 회원국으로서 금융, 환경, 노동 등 분야별로 우리 나라가 치루어야 할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입과 관련한 분야별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 있다. 우리 나라는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자유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는 OECD 정책을 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하겠지만 산업발전의 역사가 짧고 아직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장기적으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하여 경쟁력을 증진시켜야 하겠다.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에너지 관련분야, 특히 석유부문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부문은 기후변화 협약과 같은 환경부문의 개도국 지위 지속여부와 관련한 문제,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부여되는 IEA

가입문제, 투자 자유화와 관련한 국내시장 개방 등을 들 수 있겠다.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기존의 GATT 체제가 WTO체제로 개편되고 환경과 무역의 연계등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는 OECD가입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몇몇이 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겠다. 여기에서는 OECD가입과 관련한 석유산업부문의 영향과 이에 대한 준비사항을 검토하여 보겠다.

2. OECD 가입 협의의 결과 및 평가

OECD 가입협의를 금융, 노동,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 졌으나, 협의의 결과중 에너지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문은 투자자유화 및 환경부문 심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CIME)」 심사과정에서 우리 나라는 OECD투자규범을 수용하기 위하여 투자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업종별 투자자유화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분야에 있어서 가입심사시 쟁점이 되었던 분야는 M&A형 직접투자와 5년 이상의 장기대부의 자유화, 그리고 금융업 투자 개방등이었다.

OECD 가입심사과정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규율하는 「외자도입법」이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9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한되는 미개방업종 또는 부분개방 업종의 개방일정을 앞당김으로써 투자 자유화가 가속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방을 확대함에 있어서 공공성이 강하거나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보하고 있는 업종과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곤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개방속도의 완급을 조절하거나 2000년 이후에도 미개방 업종으로 유보하였다. 이에 따라 미개방 업종은 97년 1월

현재 30개에서 2000년 1월 현재 18개로 줄어들게 되어, 자유화율은 97년 1월 현재 97.4%에서 2000년 1월 현재 98.4%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석유부문의 경우, 현재 유가 연동제하에서 최고가격으로 규제되고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 LPG중 LPG를 제외한 유종의 가격을 97년 1월부터 자율화하고 석유류 수출입 승인제를 1997년부터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99년 1월부터는 정유부문에 대한 진입과 투자에 대한 규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되며, 등록요건은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석유 저장시설의 보유이다. 석유판매업에 대한 허가제도도 1997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며, 등록요건으로서 일정수준의 저장시설과 품질 유지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유화 일정에 따라 국내 석유부문의 대외경쟁력 제고가 속제로 남아 있다.

한편 OECD의 규약 178개중 71개가 환경분야로서 환경부문은 OECD 가입관련 국내 제도 정비과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분야의 규약중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분야는 화학물질 분야로서, 화학물질의 신고,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데이터 정보교류, 사고예방 및 조치,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유해화학물질 오염배출 및 이송등록제도등 국내제도 정비와 투자를 요하는 과제들이다.

우리 나라는 총 65개의 환경관련 규약을 대부분 수락하였으며, 이 중에는 유보기간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로 수용한 규약이 12개이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가 많은 OECD의 환경규약을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에 우리의 환경정책이 도달해 있음을 말한다.

환경부문에서 OECD 가입에 따른 주요 관심사는 각종 규약의 이행보다는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국제환경협약(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상에서의 지위 변화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개도국의 지위에서 각 협약에 대응하였던 우리 나

라는 OECD 가입협상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가입 후의 한국의 입장에 대하여 질의를 받았으며, 우리 정부는 OECD가입이 선진국의 의무이행으로 요구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

3. OECD 가입이 에너지분야에 미치는 영향

지난 OECD 가입심사·검토 도중 무역위원회 및 환경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사항이 되었던 우리 나라의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가 향후 국제협약에서의 쟁점사항이 되었다.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OECD 가입과 관계 없이 우리 경제의 성숙도와 능력에 따라 부문별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농업 및 기후변화협약을 제외하고는 향후에 논의될 통상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매우 거세어지고 있다. 지난 96. 7 제네바 제2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당사국 각료들이 향후 채택될 부속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고 각국의 상황에 맞는 공약이 되도록 *Flexibility*를 인정하고 2010년 또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결정하는 *Long-Term Basis*에 근거하여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도 모두 참가하는 내용의 각료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 더불어 OECD 가입으로 의무부담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겠다.

OECD 가입으로 우리 나라는 IEA 회원국의 자격이 주어졌다. 총에너지의 97% 정도를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비상시 에너지 안보력의 제고를

위하여 IEA에 가입하여 회원국들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겠다.

우리 나라는 OECD 정보망 및 통계자료, 관련회의 등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기술에 관한 첨단기술정보를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대외이미지 제고를 통해 개도국시장에의 진출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OECD 가입으로 인하여 석유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기후변화협약, IEA 가입문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IEA 가입

IEA는 제 1차 석유위기 직후 세계 석유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유국 공동체인 OPEC에 대응하고자 1974년 IEP(*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에 따라 에너지 소비국중 선진국들이 OECD 외는 별도 독립기구로 설립하였다.

주요기능은 석유생산국 및 비회원 석유소비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국제 에너지교역의 안정과 에너지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석유의존 감축을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을 추진하고 비상시 석유유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현재 28개의 OECD 회원국중 아이슬란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5개국을 제외한 2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가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IEA 집단에너지 안보체제를 통한 비상시 에너지안보의 확보, 에너지절약 대체에너지개발을 통한 석유의존도 감축, 선진국 에너지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우리 나라 에너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에너지정보의 빠른 수집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가입함으로써 우리에게 부담되는 의무사항도 적지 않다. IEA 가입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90일 석유 비축의무 등 IEP 협정상 의무사항과 전력, 석유, 가스등 분야별 권고사항 및 석유의존

도 저감을 위한 장기협력사항등이다. 가장 큰 부담은 90일 석유 비축의무이다. 우리 나라의 석유비축현황은 96. 10 현재 정부 23일 민간 33일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는 IEA측에 2005년까지 3차 석유비축계획이 완료되면 90일 석유비축이 가능함을 설명한 바 있다.

다음은 석유 수요 억제 및 석유 할당의무이다. 석유 공급 부족사태 발생시 석유 소비의 7-10% 수요억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유사시 IEA결정에 따라 비축석유의 권리 및 의무를 지게 된다.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가 주어진다. 자국 관할내의 석유회사 활동상황에 관한 정보와 자국의 석유수급, 비축수준, 수송능력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정기적으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회원국은 자국 석유회사의 재무구조, 생산현황, 공급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IEA측의 권고사항은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대부분 수용이 가능하나 비축의무, 전력 및 가스가격 결정에 비가격 요소 제거, 가스 공급의 경쟁체제 도입등은 현상황에서 수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장기협력계획에서는 수입석유에 대한 의존도 감축, 에너지절약 촉진,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에너지 연구개발, 법률적·행정적 장애 및 차별적 관행의 철폐 등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률적·행정적 장애 및 차별적 관행의 철폐의무는 외국자본 유입시 국내 기업의 대응력 확보 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므로 국내 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내 에너지시장 개방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캐나다는 IEA 가입시 외국자본의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나. 기후변화협약

현재 발효중인 160여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중에서 '92. 6 리우유엔환경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은 이의 목적이 이산화탄소등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야기되는 해수면 상승 등 재난을 방지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는 '93. 12월 47번째로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협약 채택 3년후인 '97. 3월까지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통계작성 등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은 기후체계의 안정을 위하여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의 억제를 전제로 하게 되며, 이는 국가의 경제, 산업구조의 수정을 요구하므로 결국 환경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경제, 산업구조의 조정에까지 발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칙을 천명한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협약은 '95. 3월 제1차 당사국 총회(베를린)에서 의정서 협상의 논의가 시작되어 이의 채택이 완료되면 Green Round로 일컬어지는 환경규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UR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는 OECD 가입협의 결과 가입후에도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로 보장 받았으나, 앞으로 전개될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부속의정서 협상등에서 이에 대해 EU, 미국등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가 부담해야 될 의무사항은 협상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되며, 현재로서는 어떻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볼 때 개도국의 지위에서 매년 10%에 달하는 에너지 소비증가율을 지속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무 이행에 대한 최대한의 유예기간 확보와 우리 나라가 수용가능한 공약, 예를 들어 에너지 원단위 개선목표 설정등을 협약 당사국들에 제시하여 우리 나라의 사

정이 반영된 공약을 관찰시켜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에너지 사용이 제한받을 때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석유부문이다. 우리 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60%이상이 석유부문이며 석유는 석탄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향후 협약의 의무사항이 우리 나라에 부과될 경우 석유 소비를 저감시키는 정책이 수행되고 석유 사용이 많은 산업부문의 공정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 기타사항

다음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자유화 압력이 가증될 것이다. OECD 국가들은 에너지산업에 있어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효율적 운영 및 투자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 자유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다자간 투자협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92, '94년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IEA의 우리 나라 에너지정책 조사 보고서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한 합리적 가격 결정과 에너지산업에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권고한 바 있다.

4. 국내 석유산업부문 대응방안

가. 석유수급의 안정성 확보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향후에도 수요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우리 나라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석유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석유의존도 심화로 인한 수급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자주개발 원유확보량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감축하는 등 지역별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한 도입선 다변화정책을 수립하고 장기 도입계약 방식의 확대, 인근 아시아 국가와 정제산업 공동진출,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석유의존도 감축 및 적정생산과 공급, 비축설비의 확충을 통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겠다.

특히, OECD 회원국에 한하여 자격이 주어지는 IEA에 가입을 추진하여 에너지안보를 제고시켜야겠다. 정부는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석유비축을 추진하였으며, 1990-1998년의 기간동안 7개의 비축시설(비축용량 49,172천배럴)을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나, 석유제품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7개의 석유 비축시설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1998년말 정부의 석유 비축 수준이 46일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석유유통산업의 효율화 증대

석유제품의 유통경로는 현행 제도상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 3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국내 석유시장의 대내외적인 개방여건하에서 유통경로의 동태적 변화를 경직시키는 영향이 있다. 또한, 현재 100개를 약간 상회하는 석유대리점 중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을 제외한 일반대리점의 규모는 영세한 상태에 있으며, 이의 도매 및 저장기능도 약화된 상태에 있다. 주유소의 경우도 경영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류 이외의 상품에 대한 판매가 미미한 수준으로 석유제품 판매마진이 압박을 받게 될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없는 경영구조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 석유제품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물류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수송과 저유 등에 소요되는 석유제품 물류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다.

1999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석유유통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허용에 대비하여 국내 석유유통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규제의 완화와 철폐를 통해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구조개선노력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유통경로의 적정화, 유통계열화의 강화, 유통업의 생산성 강화, 물류체계의 개선, 유통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해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다. 석유정제산업의 경쟁력 제고

석유산업의 자율화에 대비하여 국내 정제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긴요한 과제이다. 국내 정제산업은 국내의 시장에서 해외의 석유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며,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다른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민간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고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에너지·자원정책을 수립하여 공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부규제만을 유지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점차 축소해 나가면서, 개방과 참여의 확대를 통해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석유정제산업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상류부문 진출을 통한 수직적 통합의 완성과 아시아지역 정제산업 진출로 인한 수급기반의 확대, 대내적으로는 제품의 가격 및 수출입 자유화 등 기업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 정제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특히, 에너지의 생산이나 이용에 따른 환경비용 등이 석유가격에 반영되도록 하고, 수송부문의 석유소비 감소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경유의 가격정책을 휘발유와의 형평성과 환경비용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라.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이용에 대하여 기후변화협약 등 국내·외의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및 저유황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Energy)는 경제(Economy), 환경(Environment)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상호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며 석탄 석유를 이용한 청정에너지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천연가스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소형 차량의 보급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관련 비용부담을 에너지가격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원리에 의한 환경보전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개별 에너지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한 방법으로 비용화하여 에너지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가 환경에 미치는 외부 불경제효과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마. 해외 석유개발의 확대

우리 나라는 국내 수요(95년 6억 8천만 배럴)의 1.2%인 약 700만 배럴을 자주원유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에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이자, 공급지인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석유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이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개방화로 요약되는 국제교역 체계에서 하류부문에 집중된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석유 개발을 통한 상류부문 진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전략적 진출지역의 선정, 탐사사업과 기개발 유전 매입간의 균형, 운영사업과 지분참여 사업간의 균형 등을 통해 해외 석유 개발사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OECD 가입으로 인하여 작게는 석유부문에, 크게는 에너지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살펴 보았다. 우리 나라는 과거의 양적인 팽창을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OECD 가입은 선진국과의 정책교류를 통하여 선진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OECD 회원국 의무사항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에너지가격등을 시장기능에 일임하는 등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내실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다. 비록 가입초기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온 국민이 슬기롭게 이를 타개하여 나가야겠다.

최근 무역수지의 악화가 심화되고 에너지의 과소비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85년부터 현재까지 국민소득은 4배가 넘게 증가하였는데 에너지가격은 오히려 10% 정도 하락되었다 하며 에너지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으로 시작되는 국제 환경규제 등을 감안하여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는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여야 하겠다. ♣

해외소식

일본 LPG비축의무 완화

일본 통산성·자원에너지청은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21개 LPG(액화석유가스)원매사에 대한 민간석유비축을 '97년 2월부터 완화한다. 주요 생산국인 사우디의 對일본 수출가격이 16년만에 급등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50일분 비축의무를 계속한다면 가정용 프로판가스등의 최종가격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0일분을 한도로 이에 따라 비축여유가 없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40일분까지 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고가의 수입을 막게 했다.

出光興産, 日本石油가스등 원매사에 대한 비축 의무 완화는 '97년 2월 15일부 검사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LPG를 비축대상에 추가한 '81년 석유비축법 개정이후 대폭적인 것이다.

원매사의 비축능력은 탱크용량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50일분의 비축이 의무

화 됐다. 이 비축수준을 함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유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LPG민간비축량은 수입량의 73일분에 상당하는 약 292만톤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비축이 50일분을 밑돌고 있는 기업이 비축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10일분을 한도로 재고를 일시적으로 빌릴수 있게 되어 업계전체로 50일분의 비축을 확보하면서 개별기업의 재고부담은 상당히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사우디産 LPG가격이 폭등하여 對일본수출가격은 유럽·미국이나 아시아의 수요증가에 따라 12월 톤당 310달러(FOB)로 금년 8월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하여 '80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신문 12월 15일〉